

제1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

일 시	2026년 2월 23일 월요일 11:30~12:30	장 소	가족어울림센터 센터장실
출석현황	재석현황 6인 중 6인 출석		
출석위원	문**, 정**, 최**, 최**, 김**, 김**		
불참석위원	-		
간사(기록)	최**(사용자 위원), 최**(근로자 위원)		
회의 내용	I. 성원보고 및 전차회의 결과보고 II. 안건 1. 하남시가족센터 취업규칙 변경(안) 논의 건 2.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합의서 작성의 건 3. 2026년 근로자 복지증진 계획의 건 4. 기타 안건		
안 건	-		
결 과	2026년 2차회의는 6월 첫째주에 실시예정		
회의 내용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문**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, 정** 위원이 성원보고 함 각 위원들의 안부를 공유하고, 2026년 1차 회의 안건의 진행보고를 설명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정**: 첫 번째 안건으로 취업규칙안 논의를 하고자 함. 회의종료 후 2026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직원의 의견청취 후 취업규칙변경신고 예정을 보고함. 또한, 아이돌봄사업 취업규칙과 방문교육취업규칙에도 지침반영으로 변경해야 할 내용은 동일하게 변경함을 보고함, 두 번째 안건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합의서 작성과 기타 센터의 복지증진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자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정**: 취업규칙 변경(안)을 설명함. ①간주근로시간제 내용을 센터 외부가 아닌 센터 전체로 포괄적으로 기재하고, 준비 및 정리시간을 각 3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 ② 종사자장기근속휴가의 신설: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5년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장기근속 휴가 제도를 반영 ③경조사 휴가: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휴가일수가 1일에서 3일로 변경되어 반영함 ④병가: 병가의 기간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경기도 사회복지중사자 처우개선의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함 ⑤임신건강동행 휴가신설: 배우자가 임신한 근로자에게 산전검사를 동행할 수 있도록 동행휴가 신설 ⑥ 징계: 변경 전 자료에 '견책'부분의 내용삭제로 '경고'로 수정함 ⑥ 임신기 정기검진 기간을 변경된 임신주수에 맞춰서 수정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정**: 먼저 기존내용에서 변경이 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문의가 있는지 질의함			

- 최** : ①간주근로시간제에서 센터외부 프로그램 중 캠프와 같이 센터가 아닌 타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준비시간과 정리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 지 질의함
- 문** : 캠프 등의 활동은 활동개시를 위해 출발하는 시점을 프로그램 시작시간으로 보고 준비시간은 시작시간 앞 1시간으로 산정함을 답변함
- 김** : ③경조사 휴가의 경우 아이돌봄활동가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함
- 정** : 활동가의 경우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휴가처리는 불가함. 단,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활동가의 돌봄활동 불가시 활동취소로 인한 패널티가 나오지 않는 미활동 일수로 같음
- 최** : ⑤징계조항에서 다른 기업이나 회사보다 징계규정이 비교적 느슨해보임. 해당 규정이 다른 지침이나 사회복지시설 안내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지 질의함
- 최** : 가족사업 지침이나 사회복지시설안내의 경우 징계의 절차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, 문의하신 구체적인 징계의 내용에 관한 것은 센터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
- 문** : 사회복지시설로 이윤을 추구하는 타 기업보다 규정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함
- 정** : 기타 취업규칙 내부에 변경의 추가 문의가 없어, 신설항목에 문의로 진행함
- 최** : 자녀돌봄휴가에 대해 문의함
- 정** :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입학식, 졸업식, 병원진료 등의 사유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종사자가 필요시 연 3회 유급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. 자녀의 대상은 고등학생이하의 자녀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신설됨을 안내함
- 문** : 해당 규정의 경우 근로기준법, 노동법 등 필수로 적용법이 아닌 지역별, 업무별로 직원의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권장사항으로 내려오는 규정들로 센터 상황에 맞게 논의해보면 좋을 듯 함
- 김** : 해당 돌봄휴가제도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해보이긴 하나 규정자체의 대상 직원과 돌봄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센터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해보임
- 최** :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에 자녀외의 다른 가족은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함
- 문** : 자녀 외 가족의 경우 '가족돌봄휴가' 및 '가족돌봄휴직'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.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센터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더 필요해보여 보류로 처리하기로 함
- 정** : 두 번째 안건으로 '선택적근로시간제'시행합의를 실시하고자 함. 선택적근로시간제란 만 12세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. 센터에서는 총 3명의 신청자가 있어 반기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운영하고자 함
- 최** : 선택적근로시간제에 합의함
- 문** : 기타 추가안건이 없어 폐회를 선언함